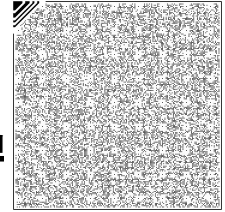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와
관련합니다.
 2.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니, 관할 지자체
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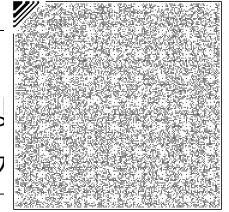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8.19.(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



불임.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본부각과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주무관	강재희	행정사무관	이성경	생활방역팀장	김정숙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	노홍인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	김강립	생활방역팀장	김정숙 2020. 8. 18.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	박능후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 8. 18.) 접수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2 팩스번호 044-202-1971 / jaehuekang@korea.kr / 비공개(5)